

경운대학교 운동부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운동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운동부는 운동부장과 각 운동부의 지도교수, 감독 및 코치 등으로 구성한다.

② 운동부장은 교학처장이 겸직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③ 각 운동부지도교수와 감독 및 코치는 운동부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
제3조(임무) ① 운동부장은 운동부를 대표하고 운동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
② 각 운동부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신입선수 선발
2. 선수 학사지도관리 및 기타 소관 운동부의 제반업무

③ 감독,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선수의 훈련계획 및 감독.
2. 훈련실시 및 입장지도.
3. 선수의 체력 향상 및 기술지도.
4. 경기에 관한 종합 분석 보고.

제4조(임용자격) ① 각 운동부지도교수는 우리대학교 교원이어야 한다.

② 감독·코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.

1. 우리대학교 교직원.
2. 해당 종목에 탁월한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.
3. 해당 운동종목의 협회에 감독·코치로 선임된 경우.
4. (예외) 해당 종목에 우리대학교 교직원 중 임용자격에 적합한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 소속 체육회에서 활동하는 우수 지도자를 위탁 선임 할 수 있다.

제5조(업무처리) ① 운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운동부 선수 선발, 훈련계획 및 장학생 추천에 관한 사항
2. 운동부 예산편성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3. 기타 운동부에 관한 사항

제6조(보수) ① 교직원일 경우 우리대학교 보수규정에 따른다.

② 위탁 선임자는 해당 지자체 체육회 소속으로서 우리대학교에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.

제7조(예산) 운동부 예산은 교비와 동문지원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편성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